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1. 개정이유

벤처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의무공시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홍정민 의원 발의, '23.4.4 시행)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창업기획자의 의무공시 사항 법제화(제22조의2)

- 창업기획자의 공시사항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행령에 상향 입법

나. 창업기획자를 겸업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사모펀드 출자를 제한하는 경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되나 이를 예외규정으로 제시(제17조제3호)

-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창업기획자'를 겸업하는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을 동시에 받게 되어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지분인수가 불가능해지는 등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본업에 문제가 생김. 따라서,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법」시행령에 행위제한 예외규정을 두어 벤처투자 활성화 촉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제17조제4호로 하고,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3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가.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나. 제16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문보육과정명
2. 전문보육과정의 운영기간
3. 전문보육과정의 내용
4. 전문보육과정의 대상자 규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p> <p>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p>1. ~ 2. (생략)</p> <p><신설></p>	<p>제17조(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u></p> <p>가. <u>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u></p> <p>나. <u>제16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u></p>

3. (생략)

<신설>

조합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
식등을 소유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창업기획자의 공시)
법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현황”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문보육과정명

2. 전문보육과정의 운영기간

3. 전문보육과정의 내용

4. 전문보육과정의 대상자 규모